

창원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567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56732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438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김원태

피고, 피항소인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병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나자현

3. D 주식회사

특별대리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4. F

변론 종결2021. 12. 9.

판결 선고2022. 1. 20.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438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표 '말소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 제2 표 '등기 접수번호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2021.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종전의 주위적 청구는 취하하고, 종전의 예비적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1행의 "피고들과"부터 3행의 "내용인데,"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전소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각 2,644/5,341 지분에 관한 2003. 12.

29.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9. 6. 11. 회복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별지 제2 표 '등기 접수번호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경정등기) 중 별지 제2 표 '말소지분'란 기재 각 지분은 원고 소유의 위 각 지분을 침범하여 이중으로 마쳐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2, 5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2,644/5,341 지분에 관한 2003. 12. 29.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가 원고의 가처분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따라 2019. 6. 11. 회복되었고, 원고가 S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원고의 위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음에도 S가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은 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9,102,056.1829/28,526,281$ 로서, 위 2,644/5,341 지분보다 $5,022,912.6471/28,526,281 (= 2,644/5,341 - 9,102,056.1829/28,526,281)$ 지분이 적고, ②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7,030,153.5571/28,526,281$ 로서, 위 2,644/5,341 지분보다 $7,094,815.2729/28,526,281 (= 2,644/5,341 - 7,030,153.5571/28,526,281)$ 지분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 각 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가처분등기의 효력에 저촉되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경정등기) 중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별지 제2 표 '등기 접수번호란' 기재 각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1, 2 전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들의 지분을 감축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위와 같이 양적으로 감축되고 남은 지분에 관하여는 종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07. 5. 16. 접수 제21505호, 제21506호, 2007. 5. 10. 접수 제20700호,

20701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 전소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2003. 12. 29.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가처분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따라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이 사건 제1, 2 전소에서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이 사건 제1, 2 전소에서의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청구가 기각된 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2 전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적용을 받아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제1, 2 전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의 판시 내용은 전소인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와 후소인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중복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이 달라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2 전소 및 후소에서 모두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원고의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사안과 달라 위 판결의 판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동일한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에서 취하되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서경원

판사진민희

판사김민정

별지